

#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 I . 결산현황

###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0원
- 징수결정액 : 40천원
- 실제수납액 : 40천원
- 불납결손액 : 0원
- 미수납액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전년도 해당없음)임.

#### 〈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A-B)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률 (%)
합 계	-	40	40	-			100
세외수입	-	40	40	-			100
임시적세외수입	-	40	40	-			100
기타수입	-	40	40	-			100

## 2. 세출결산

- 예산액 : 16억 3천 7백만원
- 예산증감 : 4천 2백만원
- 예산현액 : 16억 3천 7백만원
- 지출액 : 15억 1천 3백만원
- 이월액 : 0원
- 불용액 : 1억 2천 3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7.5%(전년도 2%)가 발생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1억 2천 3백만원임.

### 〈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계	1,637	1,513	0	124	7.5
일반회계	1,637	1,513	0	124	7.5
사업예산	1,501	1,382	0	119	7.9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62	57	0	5	8.5
사무관리비	38	38	0	0	0
국외업무여비	15	10	0	5	35.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	9	0	0	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90	1,093	0	97	8.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	6	0	1	7.1
사무관리비	410	403	0	7	1.8
공공운영비	72	72	0	0	0
국내여비	378	325	0	53	14.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	21	0	0	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특 정 업 무 경 비	276	243	0	33	11.8
	재 료 비	15	13	0	2	12.3
	배 상 급	2	1	0	1	67.2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9	9	0	0	3.7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49	232	0	17	6.4
	사무관리비	1	1	0	0	0
	공공운영비	25	24	0	1	2.1
	전산개발비	223	207	0	16	7.0
	행 정 운 영 경 비	136	131	0	5	3.5
	기 본 경 비	136	131	0	5	3.5
	사 무 관 리 비	105	105	0	0	0
	국 내 여 비	15	10	0	6	3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	6	0	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	10	0	0	0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 Ⅱ . 검토의견

### 1. 세입결산

#### 가. 수당 지급 관리 부적정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은 없으나, 2017년도 11월, 12월 수당 반납금액으로 4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음.
- 당초 회계기간내에 당해연도 수당의 반납사유 발생 시에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반납 처리(재무과의 반납고지서에 따라 반납)하나,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급여반납 세외수입(40,000원)은 2017회계연도 예산지급분으로 다음연도인 2018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1)

#### 〈 최근 3년 민생사법경찰단의 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 : 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2018년	224-06 그외수입	0	40,000	40,000	0	2017년 11월, 12월 수당 반납 (시부사망에 따른 가족수당 반납)
2017년	224-06 그외수입	0	-	-	-	
2016년	224-06 그외수입	0	159,980	159,980	0	부서 전입 직원의 착오지급된 위험수당 및 특수지수당 반납금액

1)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1. 경상적 세외수입

-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 가. 재산매각수입      나. 부담금      다. 과징금 등      라. 기타수입      마. 지난연도수입

- 민생사법경찰단은 소액이지만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의 철저한 반납 및 수당지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세출결산

### 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5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8.6%를 집행(7백만원, 불용률 1.4%)하였으며, 세부 내역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원고료’는 78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공무 국외 통역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10만원을 집행하였음.
  - ‘직무 공동연수’는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천 3백만원을 지출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1백만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했으며,
  - 특히, ‘수사활동경비’는 2천 8백 80만원을 편성했으나 4천 7백 63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시 의회에 제출한 예산보다 1천 6백 8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사무관리비 예산을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음.
- 한편, ‘홍보비’는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2백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도에는 100%를 증액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2019회계연도 ‘홍보비’의 예산집행현황(2019.6.5. 기준)을 살펴보면, 카드뉴스, BI적용 기념품과 전광판, 지하철역 홍보 등에 1천 3백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87%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민생사법경찰단은 홍보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생사법경찰단 홍보비 집행 현황(2019. 6. 5. 기준) 〉

(단위 : 천원)

연번	적 요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1	홍보 콘텐츠제작	60,000	7,626	카드뉴스, 비적용 기념품 등
2	홍보물 인쇄 및 광고	40,000	5,857	전광판, 지하철역 홍보 등
합 계			13,483	

〈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 목	2018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산 출 액		집행액	집행잔액	편성액
		세부내역	편성액			
계			553,854	546,390	7,464	627,291
특별사법 경찰 직무 역량 강 화	사     무	강사료	9,920	8,040	1,880	6,140
		원고료	780	-	780	660
		책자인쇄(교재)	7,686	6,688	998	7,686
		교육운영비	3,284	3,782	△498	1,264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중식비	4,270	4,049	221	3,850
		직무 공동연수	12,000	13,281	△1,281	20,000
		공무국외 통역비			2,100	△2,100
특별사법 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관     리	기획단속 매식비	72,000	61,598	10,402	72,000
		차량 임차료	157,680	133,676	24,004	177,600
		피복비(제복제작비)	47,150	46,871	279	46,200
		홍보비	50,000	47,630	2,370	100,000
		수사활동 경비	28,800	45,602	△16,802	28,800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	6,000	7,105	△1,105	-
		압수물 폐기 비용	4,000	3,652	348	4,000
		수사팀 운영	38,393	47,673	△9,280	38,393

		체력단련실 운영	6,000	8,752	△2,752	7,200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 스템 구축 및 영 운		제안서평가위원수당	1,200	1,200	-	-
기본 경비	비	기본사무용품이류	1,059	5,428	△4,369	1,191
		소규모수선비	280	2,120	△1,840	315
		행정장비수리비	1,512	8,376	△6,864	1,512
		도서구입비	400	806	△406	400
		주요업무추진급량비	82,080	65,158	16,922	90,72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19,360	22,803	△3,443	19,360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하므로 민생사법경찰단은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무관리비의 비과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 및 자의적인 집행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나. 수사 차량의 적절한 관리

- 2018회계연도에는 2017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차량 19대를 임차하여 차량임차료 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1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1억 3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2천 4백만원(15.2%)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음.
- 2017회계연도에도 차량임차료는 1억 5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1억 3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천 3백만원(14.6%)을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집행하였음.

- 민생사법경찰단은 차량임차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불용처리 및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필요·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차량 임차 현황>**

**보유차량 : 21대 (임차 19대, 자차 2대)**

**수사차량 필요성**

- 현장 단속·수사 활동, 피의자 호송, 압수물 수송, 야간단속, 미행 및 잠복활동 등에 필요
- 특히, 현장 증거자료 압수 등의 경우에는 수사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일시에 많은 장소를 방문하게 되므로 많은 차량 필요

**최근 3년간 수사차량 임차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계약업체명	차량 대수	계약금액 (예산액)	계약기간	비고
2016	롯데렌터카(주)	19대	133,433	‘16년1월~12월 (12개월)	제한경쟁입찰 (1개업체투찰 3차 수의계약)
2017	퍼시픽렌터카(주)	19대	134,640	‘17년1월~12월 (12개월)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2018	(주)삼보렌터카	19대	133,676	‘18년1월~12월 (12개월)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2019	퍼시픽렌터카(주)	21대	145,464	‘19년1월~12월 (12개월)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 다. 불용예산 발생의 문제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16억 3천 6백만원) 대비 불용률 (집행잔액 1천 2백만원)은 7.5%로 전년도(2.0%)보다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1%)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 여비	15,000	9,707	5,292	35.3	신규 지명분야 수사 및 각종 현안 업무 처리로 중국(홍콩, 광저우), 일 본 등 2회 실시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배상금	2,160	707	1,452	67.2	2017년 대비 참고인 조사 관련 수 사건수(11회→7회) 감소로 인하여 집행사유 미발생
기본경비	국내여비	15,680	10,919	4,760	30.4	시직원 56명*20% 산정되었으나 현 원감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하였으며 2019년 실소요에 맞게 50% 감액 편성

※ 국내여비는 2019년 실소요에 맞게 50%감액 편성하였음.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의 경우는 편성 예산(1천 5백만원) 대비 35.3%에 달하는 불용률(불용액 5천 3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2017년에는 태국(관광경찰의 역할과 기능) 및 일본(광역단위 자치경찰 운영)을 방문하였으며, 2018년에는 중국(상포권침해 분야) 방문 이후 일본(자치경찰 운영 벤치마킹) 방문함.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는 2017년(편성 1억 5천만원)에도 집행실적(8천 8백만원, 58.8%)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불용처리(9천 7백만원, 64.7%)하였음.

- 민생사법경찰단은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시 과거결산결과 등 현실적인 예산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국외업무여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7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8,814	6,186
2018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9,707	5,292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11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10억 9천 3백만원을 집행하여 8.2% 불용률(불용액 7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이 중 ‘배상금’의 경우는 2017년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6% 불용률이 발생하였음에도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시 2배로 증액하였으나 예산의 67.3%가 불용처리되었음.

**〈 최근 3년치 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건수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016년	-	-	-	17건
2017년	1,080	900	180	11건
2018년	2,160	707	1,453	7건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이중 국내여비는 예산현액(1억 5천 6백만원) 대비 불용률이 30.4%(불용액 4백만원)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렇게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바, 민생사법경찰단은 과거 결산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최문숙